

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2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 . 제안이유

공무원의 권익보호 수단인 우리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위원회 개최시 1989. 1. 1이후 출석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심판위원보다 상대적으로 수당이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회 위촉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토록 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출석수당만을 지급한 위촉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함
(안 제3조제2항).

대전광역시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행정심판위원회” 다음에 “및 소청심사위원회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일비) ① (생략)</p> <p>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<u>행정심판위원회</u>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일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<u>행정심판위원회</u> 및 <u>소청심사위원회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